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1

(2012. 9. 10)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8월 23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2년 8월 28일

나. 의안번호 : 12-64

4. 관련근거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자치구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보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 (1) 안 제14조의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제1항에서는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것 ” 을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 ” 으로 개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 를 “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로 개정하며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 “ 등은 제외한다 ” 를 “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로 개정함.
- (2) 안 같은 조제1항제1호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 “ 까지로 한다 ” 를 “ 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 로 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에서는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 월 2회로 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휴업일로 한다 ” 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 로 개정함.
- (3) 안 같은 조제3항을 신설하여 “ 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함.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영업규제의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여 법률에 부여된 판단재량을 박탈하였고 처분의 사전통지 미 이행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례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검토안을 참고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특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공고하게 함으로서 조례의 위법성과 관련된 법리다툼의 여지를 해소하여 법정안정성을 유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상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